

■ 토론 내용

○ 권태인(사회자, 중재위원) : 주제발표해주신 정결진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현(대구경제신문 사장) : 꽤거리 취재가 무조건 나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때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취재관행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사 실 제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취재한 것이 오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확인 없이 보도하게 되어 모두 오보가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 이종학(대구상공회의소 홍보팀장) : 대구지역에 신청된 기사를 분석하여 오보된 기사유형에 사건 사고, 범죄기사, 행정 분야 순으로 많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인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하고, 취재원과 언론사 관계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권합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전국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사건 사고 범죄, 행정 분야 등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청인과 언론사 관계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방지를 위해 위원회는 언론사를 상대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자리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오보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자 개인적인 성향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자 개인이 사실 확인을 위해 열심히 취재해야 하고, 언론사는 매일신문의 기사심의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 김보상(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언론사의 정정보도문은 아주 작게 보도하여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정정보도문도 원 보도에 맞게 보도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의 형태나 크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주(사무총장) : 정정보도문은 조정중재결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위원회가 그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입장이 다른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용이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계속 연구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덧붙여 위원회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와 방안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혜숙(대구교통방송 방송편성제작국장) : 취재관행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오보를 한 후에 관행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일반적으로 관행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관행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주제

논문은 관행을 따르다 오보가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보가 나온 이유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 정만진(대구시 교육위원) : 오보를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로 분류하였는데,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전제로 국민이 무엇을 알고 하는가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과 독자입장에서 보면, 알고 하고 하는 것을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정치권력이나 행정 권력에 의해 국민들이 소외되기도 합니다. 관변자료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면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알권리 측면에서 오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지역의 언론사들이 영향력이 큰데 비해 신청 건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우리 언론이 과연 대중이 알고 싶은 것을 보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변자료만을 보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언론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을 찾아 보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쪽에만 치우쳐 보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도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공적영역만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관변자료만을 보도하면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오보가 아닌가 하고 질문하셨는데, 관변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면 홍보가 될 수 있고, 잘 분석하여 보도하면 좋은 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47건이지만 실제 3년간 신청된 건수는 77건입니다. 이중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47건이 된 것입니다. 실제 대구지역의 신청 건수가 적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태인(사회자, 중재위원) : 언론 현업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최미화(매일신문 편집부국장) : 요즘은 관변자료를 보도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발표내용에 객관적인 오보유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보를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송고된 기사를 데스크에서 확인하고 보도하였는데, 현재는 전자조판체제가 갖추어져 송고된 기사를 여러 부서에서 검색할 수 있고 검증은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오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조판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규모가 작은 신문사들이 많이 신청됩니다. 이런 신문사의 기사는 사실미확인으로 오보가 많이 발생합니다. 1차적으로 취재기자가 열심히 취재하면 그 만큼 오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취재일선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문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터넷신문사들은 취재인력이 부족하여 사실 확인 없이 다른 신문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다 오보를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종훈(경북뉴스 편집국장) : 보도자료를 받고 마감시간 때문에 확인취재를 못하고 보도하였는데, 오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한 측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묻고 싶고,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슬자리를 갖는 장면이 보도되었다면, 해당 공무원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보도자료를 보도한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

다. 초상권과 관련된 질문은 사무총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주(사무총장) :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대로 보도하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초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사실 보도에서 범죄사실 자체는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범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공익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술자리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도 얼굴 사진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 김보상(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공무원도 근무시간에 식사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로성 목적의 보도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성(대구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처장) : 과장보도도 오보로 분류되는지 묻습니다. 일전에 아파트 입주자들과 건설업자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기자가 한쪽 당사자의 입장만을 크게 부각시켜 보도하였습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쪽만 크게 보도했다면,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오보입니다.

○ 김재성(대구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처장) : 기자가 상대방을 부추기어 다툼을 유발시키고 그것을 촬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보도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그러한 보도는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 임경희(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회장) : 주제발표하신 내용 중 오보 분석 결과 경제관련 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기업의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주인공은 아파트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가 광고주로서 언론사에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아파트 광고가 나오면 광고성 기사도 함께 나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불만스러운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도된 오보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경제관련 기사는 오보일 확률이 적습니다. 그만큼 경제기사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성 기사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도 기업적인 측면이 있고 사적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입장에서 보면 의도된 오보일지라도 언론현실상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신문을 모두 구독하여 언론사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좋은 신문이 될 수 있고, 그런 구조적 오보도 사라질 것입니다.

○ 전용진(대구인터넷뉴스 사장) : 주제발표하신 내용 중 언론매체별 분류를 신문과 방송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인터넷매체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분류 시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가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결진(발표자, 중재위원) : 과거에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분류에서 빠진 것입니다.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했는데 조정을 받아야 하는가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언론보도와 관련이 있다면 조정중재의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도 보도기능이 있으므로 당연히 조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도권

에 진입했느냐하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이찬우(대구중재부장) : 인터넷신문도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법원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은 관할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길성(광복회 대구지회 사무국장) :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이 편파적인 방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이 있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주(사무총장) :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하여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농림부가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재부는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막판에 결렬되어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MBC가 이의신청하여 법원으로 자동소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 권태인(사회자, 중재위원) : 토론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 권성(위원장) :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정결진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활발히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전에 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본부장의 상담과 교육에 대해 설명을 들겠습니다.

○ 오광건(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본부장) : 우리 센터에서는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주관하고 제도에 관해 연구하며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과 사전예방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연간 70여 차례 실행해 왔습니다. 주로 언론사측에 대한 피해예방차원의 교육이 진행돼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언론보도에 의한 잠재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피해구제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언론사에 대한 피해예방교육도 현재와 같이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추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헤드릴 예정입니다만, 혹시 이 자리에 위원회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단체나 대학교, 기업체,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계시면 위원회 대구사무소나 서울사무처로 교육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알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권성(위원장) : 위원회가 오보예방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오보방지를 위하여 언론사 교육은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피해구제 차원의 교육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 중 정정보도문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정보도문의 크기나 제목 형태 등은 당사자간의 협의로 조정성립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하였음에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부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결진 교수께서 오보에 대해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주셨는데, 사실 미확인에 의한 오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주제논문은 위원회 오보예방교육의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대구지역의 신청건수가 왜 그렇게 적은가 하고 지적해주셨는데, 2005년도 대구지역 신청건수는 14건으로 부산 35건, 경기 87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대구지역의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정에 주력해 왔지만 중재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중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에 가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위원회에서 처리하면 짧은 시간 안에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특히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뉴스도 조정대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포털이 취급하는 보도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생긴지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정중재의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분쟁을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 법원이외의 곳에서도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와 같은 기구를 갖거나 법률적 체계를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법원이외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우리 위원회가 세계 속으로 전파되고 공동 연구를 통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의 중심이 되어 국내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심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